형사책임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리해

장 성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 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 며 국가, 사회협동단체재산과 인민의 헌법 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김일성**전집》 제50권 247폐지)

법기관들이 범죄자들에게 추궁하는 법 적책임의 기본형태인 형사책임은 형법리 론과 형사법실천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 이며 형법리론과 형사법실천의 모든 문제 들은 형사책임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론리학적인 개념정의방식에 기초하여 형 사책임의 개념을 정의하면 형사책임은 형 법규범을 어긴자에게 적용되는 법적책임 이라는 일반적징표를 반영하며 구체적으 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법기관이 범죄행 위를 감행한자에게 형법규정에 근거하여 추 궁하는 일종의 법적책임이라는 본질적징 표를 반영한다. 다시말하여 형사책임이란 행위자가 자기가 감행한 범죄행위로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추궁받게 되는 법적책임을 의 미한다.

형사책임은 법적책임의 하나로서 형법을 위반한것으로 하여 발생되는 형사법상의 법적책임이다.

형사책임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책임》, 《법적 책임》의 의미를 정확히 리해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형법에서 사용하는 《책임》이라는 말은 세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있다. 첫째로, 일부 경우에는 형사법적의무 즉 의무적인 책임을 의미한다. 례하면 《책임있는자》, 《책임일군》 등이다. 둘째로, 많은 경우에 죄책 즉 행위에 대

한 책임을 의미한다. 례하면 《추긴자는 추긴 범위안에서 실행자가 수행한 범죄만을 책임진다.》 등이다. 셋째로, 형벌책임 즉 형법상의무를 위반한것으로 하여 형법규정에 따라 응당 형벌을 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례하면 《단순형래의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유다.》 등이다.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즉 하나는 응당 맡아서 하여야할 의무이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일을 한것으로 하여 초래된 결과에 대하여 지게 되는 부담이나 제재라는것이다.

책임의 의미에 기초하여 법적책임의 의미에 대하여서도 일반적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론의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법과 규정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거나 법규범에 의하여 인정된 의무의 측면과 우에서 지적한 법적의무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리행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산생된 해당한 법적후과에 대하여 지게 되는 부담의 측면을 의미한다.

법리론상 그리고 립법, 사법실천에서 일 반적으로 말하는 《법적책임》은 실지에 있 어서 법적의무를 어긴것으로 하여 산생된 법적후과에 대하여 지게 되는 불리한 부 담을 의미한다. 법적책임을 설정하는 목적 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응당 리행해야 할 법적의무를 자각적으로 리행하도록 촉진 하는데 있다.

실지 법적책임과 법적의무는 서로 다른 법적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의무에 대응되는것은 권리이며 책임에 대응되는것은 권력이다. 권리-의무관계에서 권리와 의무

는 호상적이지만 권력-책임관계에서 책임은 권력에 의해 강제로 가해지는것으로 서 일방적이다.

둘째로, 의무는 권리자의 권리포기로 하여 리행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책임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대만으로 인정된다.

셋째로,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법적책임을 정하게 되며 지어는 일정한 국가적강제가 초래된다. 책 임을 리행하지 않게 되면 직접 강제할수 도 있다.

넷째로, 의무의 실현은 반드시 의무자혹은 그 대리인의 행위를 통해야 한다면 책임의 실현은 때로는 책임지는자의 행 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례하면 행위자 의 가족측에서 손해배상하게 하는것을 들 수 있다.

법적책임은 법을 위반하거나 법이 규정 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기초하여 지 는 책임이다.

우선 법적책임을 산생시키는 기본원인은 법위반행위이다. 법위반행위는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 지배계급의 리익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는 그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하며 그것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요구에 맞는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되게 한다. 위법행위와 법적책임은 인과관계에 있다.

또한 법적책임은 법에 기초하여 지는 책임이다. 법적책임은 일정한 당사자에게 차례지는 불리한 법적후과로서 아무렇게나 지는것이 아니며 반드시 법에 기초하여 지게 된다.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제시할뿐아니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어떤 불리한 후과, 책임이 차례지는가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규정한다. 법적책임을 지

는 구체적원인은 각이할수 있지만 최종근 거는 법이다.

법적책임이 법에 기초하여 지는 책임이라는것은 법적책임을 지는가 안지는가 하는것도 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어떤 형태의 법적책임을 지는가 하는것도 법에 따라 결정되는 책임이라는것이다. 법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어떤 형태의 법적책임도 추궁할수 없다. 법적책임은 순조롭게, 스스로 리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국가기관 일반적으로 재판기관이 법적책임을 확정하고 추궁하게 되는데 재판기관은 바로 법에 근거하여 책임을 확정하고 추궁한다. 아무리 재판기관이라고 하여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법적책임을 확정할수도 추궁할수도 없다.

형사책임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형사책임자체의 고유 한 특성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하는것이다.

형사책임은 우선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 생되는 법적책임이다.

법적책임은 대체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산생된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크게 범죄와 위법행위로 구분된다.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제도, 법질서를 고의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사회적위험성이 있는 엄중한 행위이며 위법행위는 기관본위주의, 공명심, 관료주의와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에 물젖어 국가의 법을 위반한 사회적위험성이 비교적 경한 행위이다.

국가는 법위반행위가 다같이 국가의 법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지만 사회적위 험성정도와 그것이 침해한 사회관계가 다 른것으로 하여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에 따라 그에 적합한 법적책임을 선택하 여 적용한다.

형사책임을 산생시키는 근거는 범죄행 위이다.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야만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 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없다.

형사책임은 또한 범죄자가 국가앞에 지 는 법적책임이다.

형사책임추궁 및 실현과 관련한 형사법 률관계의 당사자에는 형사책임을 지는자 와 형사책임을 추궁하는자가 있다.

형사책임을 추궁하는자는 형사사건취급 처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재판기관이며 재 판기관은 형사책임에 대한 추궁, 확인, 집 행을 담당한다. 형사책임과 관련한 립법상 의 규정은 립법기관이 하다.

형사책임을 지는자로는 반드시 범죄행위를 감행한 당사자만이 될수 있다. 형사책임을 지는자에는 범죄를 감행한자외의 기타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범죄의 경우에는 물론 공범의 경우에도 범죄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주모자와 추종자, 실행자와 추긴자, 방조자로 구분하고 매 개별적범죄자들의 죄과에 따라 형사책임을 각이하게 지운다. 이런 의미에서 형사책임은 범죄자개인이 지는 책임이라고 특징지을수 있다.

우리 공화국형법에서는 범죄를 감행한 본인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법 인범죄와 집체책임은 규정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형사책임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중 요한 요구이다.

형사책임의 처벌 및 예방기능을 높이자 면 형사책임이 개인책임으로 되여야 한다. 형사책임은 사회적위험성있는 행위를 한 자들을 징벌할뿐아니라 범죄자와 기타 사 회성원들을 교양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형사책임의 처벌 및 예방 기능을 높이자면 범죄자들에 대하여 건당, 사람당으로 적합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 래야 범죄의 엄중성정도,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에 맞게 처벌할것은 처벌하면서도 교 양할 대상들을 교양할수 있다. 건당, 사람 당으로 책임을 지울 때 범죄자들이 다시 는 범죄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며 범죄자와 류사한 처지에 있던자들에게는 공 포와 경고를, 기타 사회성원들에게는 심각한 자극과 교훈을 주어 범죄의 길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수 있다.

형사책임은 범죄자가 범죄적피해를 입은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앞에서가 아니라 국가앞에 지는 책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은 사회공동의 리익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대표 되고 옹호보장된다. 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사회적위험성있는 행위는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되며 범죄를 범하는것은 국가앞에 죄를 범하는것으로 된다. 이로부터 범죄자는 마땅히 국가앞에 자기의 죄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범죄자에게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된다.

형사책임은 또한 제재적성격이 강한 책 임이다.

일반적으로 법적책임은 제재적성격과 보 상적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런 성격들을 가 지는 정도는 법적책임의 형태에 따라 각이 하다.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보상적성격을 띠지 않으며 제재적성격이 강한 형벌을 지 우는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한다. 이것은 형 사책임이 다른 법적책임보다도 제재적성격 이 강한 책임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형사책임이 제재적성격이 강한 법적책임이라는것은 형사책임이 법적책임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책임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있다. 이것은 형사책임의 내용에서 잘나타난다. 형사책임의 내용에는 범죄자를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구속하거나 정치적권리 지어범죄자의 육체적생명까지도 박탈하는것이포함되여있다. 이것들은 다른 법적책임에서 찾아볼수 없는 형사책임의 강한 징벌성, 폭력적성격을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형사책임이 행위자에게 초래하는 불리한 영

향 또는 후과는 기타 형태의 법적책임들 에 비하여 훨씬 중하다.

형사책임이 강한 징벌성, 폭력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범죄가 사회적위험성이 큰 행위라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의 공동의 리 익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엄중히 침해하는 범죄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가하지 않고서 는 사회주의제도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발 전시켜나갈수 없다.

형사책임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다른 법적책임들과의 차이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하는것이다.

형사책임은 법적책임의 일종으로서 기타 형태의 법적책임들과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점들을 가지지만 민사책임, 행정책임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여러가지 차이를 가지고있다.

첫째로, 발생의 근거가 다르다.

형사책임의 발생은 범죄행위 즉 가장 엄중한 위법행위에 기초하지만 민사책임과 행정책임의 발생은 민사법상, 행정법상 위법행위에 기초한다. 물론 민사법상, 행정법상 위법상 위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엄중한 정도에 이르면 성질에서 변화가 생기며 형사위법행위 즉 범죄행위로 된다. 범죄행위에 기초하여 발생되는 법적책임이 곧 형사책임이다. 그러나 범죄행위가 민사법률관계,행정법률관계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외에 민사책임,행정책임도 함께 발생한다.

둘째로, 실현방식이 다르다.

범죄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형사책임은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주로 형벌적인방식으로 실현된다. 례하면 판결에 따르는범죄자의 인신상자유나 생명에 대한 제한또는 박탈로 표현된다. 그러나 민사책임, 행정책임은 행정적 및 민사재판절차 지어는당사자들사이의 자발적리행으로 실현될수있으며그 형식과 내용의 면에서 폭력적, 장

벌적성격을 띠는 형사책임과는 달리 규률 적, 재산보상적성격을 띤다. 형사책임, 민 사책임, 행정책임이 동일한 범죄행위로 하 여 발생하였을 때 형사책임은 우선적으로 추궁하는 지위에 있으며 국가는 형사책임 에 대하여 우선적인 추궁을 할수 있다.

셋째로, 책임확정원칙이 다르다.

형사책임의 실현은 당사자의 생명, 자유 등의 인신상권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 는것으로 하여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원칙 은 민사책임, 행정책임을 확정하는 원칙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여러가지이다. 형사 책임의 확정과 관련하여 각국 형법들에서 는 《죄형법정주의》원칙, 주객관통일원칙 등을 확립하고있으며 특히 우리 공화국형 법에서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 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규제하는것 을 통하여 형사책임의 추궁범위를 엄격히 한정시키고있다. 이외에 각국의 형사소송 법들에서는 증거의 수집, 립증책임방식 등 의 측면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여 인 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그 러나 대비적으로 보면 민사책임의 확정은 반드시 행위자의 주관상에 허물이 있을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례하면 민법상 확립 되여있는 무과실책임원칙 등이다. 그리고 행정책임의 확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엄격 한 확정원칙이 없다.

넷째로, 책임추궁대상의 범위에서 다르다. 형사책임은 일종의 엄격한 개인책임으로 서 오직 범죄자만이 부담할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킬수도 없고 대신할수도 없 다. 이것은 범죄자가 지는 형사책임과 그 의 범죄행위사이의 필연적인 관계이기도 하 다. 현대 형사립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책 임을 범죄자에게만 지우는것은 공인된 원 칙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행정책임이나 민 사책임의 추궁대상으로는 행정법규범이나 민사법규범을 위반한 개별적인 공민뿐아니 라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를 비롯한 일 련의 조직체들도 될수 있다.

형사책임은 범죄, 형벌과 밀접한 련판을 가진다.

범죄와의 관계에서 볼 때 형사책임은 범 죄행위에 기초하여 발생된다. 범죄는 형사 책임발생의 전제이며 형사책임을 산생시 키는 법정사유이다. 범죄가 형사책임발생 의 전제이며 형사책임을 산생시키는 법정 사유라는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 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리유로도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없 다는것을 의미한다.

형사책임과 형벌의 관계에서 볼 때 형 사책임은 범죄자에 대한 법률상의 부정적 평가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구체적인 방식 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중 형벌은 가장 중 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이다. 물론 형벌은 형 사책임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며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서는 비형벌적조치들도 있다. 범죄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르는 형벌적용여부와 형벌적용시 형벌량정 그리고 형벌의 실제적인집행과정에 대한 조정(례하면 감형, 만기전석방, 특사, 대사 등 형벌의 면제)은 모두 형사책임문제와 련관된다. 이것은 형사책임이 형벌을 결정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기초하여 발생하며 범죄로 하여 생겨난 형사책임은 형벌을 결 정하기때문에 형사책임은 범죄와 형벌사 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 할수 있다.

모든 법전문가들은 형사책임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가지고 형사책임과 관련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법적, 정 책적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데서 공화국형법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